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0-52호
2020. 6. 19.(금)

차 례

조 례 (2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47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48호) 4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49호) 10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50호) · 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조례 제1451호)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1452호) 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조례 제1453호) 3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454호) 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455호) .. 3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456호) 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57호) 4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58호) 5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59호) 5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460호) 6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461호) 7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62호) 8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63호) 9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조례 제1464호) 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조례 제1465호) 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66호) 1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67호) 1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468호) .. 1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469호) .. 131

규 칙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95호) ... 1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96호) 14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97호) 14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규칙 제898호) 155

훈 령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49호) 162

공 고 (5)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679호) 168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공고 제2020-681호) 169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683호) 170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689호) 172
- 의료급여 상해요인 구상금(2019년 11차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691호) 178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4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
 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삭
 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 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 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 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 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 을 제한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등을 ----- ----- 그 외부강의등 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 ----- ----- 의원의 외 부강의등을 ----- . 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부강의 신고규정을 수정함(제13조제2항).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4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의회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정보를”을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교환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정보의”를 “행정정보 교환 및”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행정정보”를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

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행정사무감사”를 “예산,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견학

5. 현안사항 및 의회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7조 중 “의장은 행정정보”를 “의장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10조 중 “행정정보를 통해서”를 “교류협력을 통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정보 <u>교류협력 증진 조례</u>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u>교류협력 증진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의회와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류협력”이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이념) ①·② (생 략)	제3조(기본이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	③ ----- 행정정보 교환 및 ----- ----- -----.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하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내용
2. 행정사무감사 내용

<신설>

3. 4. (생략)

5. 당면 현안사항 등 그 밖의 자료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제9조(정보 활용의 제한) 행정정

제4조(의장의 책무) ① -----

----- 행정
정보 교환 및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교류협력 내용) -----

----- 호-----
-----.

<삭제>

1. 예산, 행정사무감사 -----
--

4.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
교견학

2.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현안사항 및 의회간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의장은 --

-----.

제9조(활동의 범위) 각종 교류협

보는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밀 유지) 행정정보를 통
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
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
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
는 아니 된다.

력 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
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
다.

제10조(기밀 유지) 교류협력을 통
하여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덕구의회와 타 지방의회 간 다양한 분야에 걸친 유기적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교류협력의 내용 및 범위를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류협력 의미 확대(제1조 및 제2조).
 - 현 조문상 행정정보 교환 중심의 교류협력의 범위를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류협력 의미 확대 변경
- 교류협력 내용 정비 및 교류 촉진 내용 추가(제6조).
 -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견학 추가
- 교류협력 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4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u>개업중인 변호사</u> 중에서 1인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촉) ----- <u>개업 중인 변호사</u>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로 위촉 대상 범위를 한정된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제한을 없애고 위촉 대상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에 국한하지 않고, 조례의 내용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개정함(제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5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소속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출
석하여 수행하는 공무나”를 “회기(「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로, “공무여행”을 “공무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
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로 한
다.

제6조제2항 중 “6일이내”를 “6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직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u>회기 중 본회의 또는 소속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u> 2. 3. (생 략)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 ----- -- <u>회기(「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u> ----- ----- ----- ----- <u>공무출장</u> ----- ----- ----- 2. 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u>준한다.</u>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공무원 재해보상법</u> 」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u>준용한다.</u>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생 략) 1. 2. (생 략)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u>6일이내</u> ,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 ----- <u>6월 이내</u> ----- ----- ----- ----- ----- ----- ----- ----- -----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의원 상해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직무”의 구체적 인정 범위의 관계 법령 준용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용어 정비 등 기타 조문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게 개정함(제2조제1항).
- 보상금 지급대상 관계법령 준용사항 명확화(제3조제2항).
- 보상금 청구기간을 “6일”에서 “6월”로 조정(제6조제2항).
-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 (현행) 공무여행 → (개정) 공무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5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대덕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고 한다)와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

계 및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덕구(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구청장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하 “행정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2.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③ 행정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덕구 소속 공무원
2. 대덕구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 ⑥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 대전광역시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를 서면으로 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관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1조(활용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1.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3조(데이터 분석·활용 제고)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등은 제11조에 따른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구현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율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 방법(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데이터의 수집·관리 방법(제9조 및 제10조).
- 데이터기반의 활용 분야 및 활성화 방안(제11조 및 제12조).
- 데이터분석·활용 제고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13조 및 제1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자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침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자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태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

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 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감정노동자가 일터에서 보호를 받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제5조).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및 배포(제7조).
- 권리보장교육(제8조).
- 상담 및 보호,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제9조 및 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
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5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
을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
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
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
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
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
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자 선정 및 발굴방법에 대하여 정의(제4조 및 제5조).
-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정함(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
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
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
태조사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
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기의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4조).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제5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엄수(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5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안전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해서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운영의 권장사항(제3조).
- 교육지원 및 홍보사항(제4조 및 제5조).
-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예산지원(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5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법 및 야간통행 등 편의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범동 주공아파트 3단지
2. 범동 한마음아파트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5조(청구 및 납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제3조).
- 지원의 범위는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제4조).
- 보안등 전기요금의 청구와 납부(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5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

제5조 중 “에너지경제과”를 “경제정책과, 에너지과학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에너지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에너지과학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성복지팀장”을 “여성정책팀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육팀장”을 “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하고 “국민건강증진업무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실·단·국장의 분장사무 (제7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8~p.1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교육공동체과, <u>문화체육과</u> ,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 봉사과, 지적과를 둔다.	제4조(자치행정국) ----- ----- <u>문화관</u> <u>광체육과</u> , ----- -----.
제5조(경제복지국) 경제복지국에 <u>에너지경제과</u> , 기후환경과, 복 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 족과, 위생과를 둔다.	제6조(경제복지국) ----- <u>경제정책과</u> , <u>에너지과학과</u>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적극행정 및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행정의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에 설치하는 과를 정함(제4조 및 제5조).
 -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변경
 - 경제복지국: 에너지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변경하고 「에너지과학과」를 신설
- 실·국 분장사무를 정비함(별표 1).
-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5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4명”을 “73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09명”을 “72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덕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39					
정 무 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 반 직	소계	736					
	3급	1	1				
	4급	4	3		1		
	5급	45	25	3	4	1	12
	6급 이하	686					
별 정 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24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u>739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709명</u>	1. ----- <u>724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20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증원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및 적극행정의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24명”에서 “739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9”명에서 “724명”으로 조정함(제2조).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

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경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변경
3. 조직개편과 인력 조정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사항을 권고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조치사항을 권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직 · 인력 운용) (생 략)	제3조(조직 · 인력 운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 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 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신 설>	④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 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경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신 설>	<p>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p> <p>2.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 변경</p> <p>3. 조직개편과 인력 조정</p> <p>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p> <p>②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조치사항을 권고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조치 사항을 권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신 설>	
<신 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채용 등 조직·인력의 운용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직원채용 등 조직·인력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제3조).
-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조치사항을 신설함(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6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인한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읍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

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이하 “읍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읍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민원 안내·상담 및 처리지원

제4조(구성) ① 읍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표읍부즈만은 읍부즈만이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읍부즈만은 대표읍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읍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5조(읍부즈만의 운영원칙) ① 읍부즈만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읍부즈만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규범의 범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읍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7조(임기) 읍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으로 위촉된 읍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고충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되는 경우
3.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만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10조(회의운영) ①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옴부즈만이 대행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법정대리인 포함)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인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인 된 사실내용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현장조사, 자료요청 등에 대하여 사무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 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감사평가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옴부즈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은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여 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면책)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조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사무직원) ① 옴부즈만의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평가실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은 옴부즈만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옴부즈만 및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조사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을 누설하거나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옴부즈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및 제4조).
-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고충민원의 처리,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옴부즈만의 수당 지급,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및 제1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6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13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

수산물, 「축산물」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대덕구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제2호에 따른 농산물 중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5.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확산,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유통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대덕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 인식확산과 참여확대를 위한 강연, 홍보, 회의, 공동체 활동 지원
7.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8.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2장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급식 관련분야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6.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7.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3장 공공급식 지원

제13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대덕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우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8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

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⑤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장: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③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및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공급식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및 제2조).
-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공공급식의 지원대상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6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 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 설>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20. 3. 2. 시행)으로 이의 신청 등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자의 신청요건 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제6조).
-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조례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6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으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으로,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을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2항	---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	---

현행	개정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 ----- ----- ----- 감면대상세액-----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 ----- ----- ----- 감면대상세액-----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 ----- ----- ----- ----- 감면대상세액----- -----

현행	개정안
감한다.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2023년 12월 31일----- ----- ----- ----- ----- ----- ----- 2023년 12월 31일----- ----- ----- ----- ----- -----

현 행	개 정 안
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 ----- -----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② ----- ----- ----- ----- ----- 2023년 12월 31일----- -----

현 행	개 정 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조항에 대한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시행 2020. 1. 15.)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체계를 정비함(제4조).
-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조항에 대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3년 연장 하고자 함(제3조제1항 및 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6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

득인정액을 말한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제3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 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마.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5.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급식지원 방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가맹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별표의 대상자 유형별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실시)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동장이 조사한 결과를 확인 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위생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학부모 대표
5.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점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아동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던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대상자 유형별 확인자료(제6조제1항 관련)

급식지원 대상자 유형	확인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한부모가족) 수급자증명서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아동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증명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긴급지원 결정통지서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가족관계확인서, 가출 신고접수증, 실종선고 판결문, 수용증명서 등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진단서, 동 복지담당자의 사실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등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복e음 자료 대체 가능) 및 건강보험증 사본, 고용입금확인서 등 맞벌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대덕구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추천자의 결석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 (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별 확인자료)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신청(추천)의견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신청(추천)의견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부식 배달 [] 기타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급식지원 신청절차, 대상자 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6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6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중점 경관관리구역 건축물란의 제2호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 위촉 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性)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충족할 때 까지는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별표 1]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19조제1항 관련)

대상범위
1.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조명공사 2.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교량·도로·육교·하천 등 토목공사 3. 총사업비가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 및 조경공사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별표 2]

심의대상 건축물(제19조제2항 관련)

분류	대상범위
경관지구 건축물	1. 경관지구 내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나. 2층 이하 건축물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미만인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로서 21층 미만인면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건축물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1. 건축공사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건축물(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⑦ (생략)</p>	<p>제17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p> <p>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1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제1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개정으로 시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용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경관심의 대상 규모 등도 그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서 경관심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의 용어를 관련 규정에 따른 용어와 일치시킴(별표 1 및 별표 2).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중 유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인 공원 및 조경공사는 제외함(별표 1).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자치구 건축 허가(심의) 대상 규모에 맞추어 조정함(별표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6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초과후 매10분 이내			주 간	야 간
1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비 고〉

- 이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 주간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4월 ~ 10월 08:00 ~ 20:00
 - 11월 ~ 3월 09:00 ~ 19:30
-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급지 : 해당없음
 - 2급지 : 해당없음
 - 3급지 : 1급지,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 지역 및 준 주거지역
 - 4급지 : 1급지 ·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
-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덕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 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간 시간에는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제는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지역 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제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9.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반경 200m이내 상가 이용의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 협약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여러 종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경감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문을 신설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요금을 면제함(별표 1).
- 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규정함(별표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6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안심마을”이란 주민스스로 치매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마을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

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연계를 위

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직원, 치매관련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사업의 자문 및 공동 진행,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민간기관 대표, 공공기관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 시점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치매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보건소 직영 치매안심센터 개소(2018. 7. 20.) 및 「치매 관리법」이 일부 개정(2019. 4.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제명).
-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수행사업을 명시함(제3조 및 제4조).
-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6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주민

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및 제4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9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에너지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을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
무관으로, 에너지과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을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정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관서(동 제외)란 중 “보건행정과장”을 각각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에너지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서명란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에너지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구 본청 실·단·과장의 분장사무 (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7 ~ p.23)

[별표 2] 보건소의 분장사무 (제11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24 ~ p.25)

[별표 5] 동장의 분장사무 (제9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별지 제2호서식) - 앞면

당 직 근 무 일 지

20 년 월 일 (요일, 일·숙직)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전결	제
당 직 자	·사령 : 직	성명	인	기관별 당직사항			
	·반장 : 직	성명	인				
특 이 사항				기 관 명	당 직 자 (재택근무자)	당 직 직 신고시간	
				오 정 동			
				대 화 동			
			회 덕 동				
당직자 보안점검 실시결과				비 래 동			
부 서 별	이상유무	부 서 별	이상유무	송 촌 동			
기획홍보실	유·무	사회복지과	유·무	중 리 동			
감사평가실	유·무	여성가족과	유·무	법 1 동			
새로운대덕추진단	유·무	위 생 과	유·무	법 2 동			
총 무 과	유·무	도시계획과	유·무	신 탄 진 동			
교육공동체과	유·무	안 전 총 괄 과	유·무	석 봉 동			
문화관광체육과	유·무	공 원 녹 지 과	유·무	덕 암 동			
회계정보과	유·무	건 축 과	유·무	목 상 동			
세 무 과	유·무	건 설 과	유·무	보 건 소			
민원봉사과	유·무	교 통 과	유·무	복합문화센터			
지 적 과	유·무	도시재생사업단	유·무	신탄진도서관			
경제정책과	유·무	의 회사 무 과	유·무	안 산 도 서 관			
에너지과학과	유·무	기 타 (대덕구체육회, 대덕구체육회 사무국, 자원봉사센터, 후별관 등)	유·무	송 촌 도 서 관			
기후환경과	유·무			대덕문화체육관			
복지정책과	유·무			대 청 공 원			
※ 당직자 보안점검 : 화재예방, 시건장치 잠금상태, 문서 보안상태 등							
C C T V 관 찰 사 항							
관 찰 시 간		이상유무	조 치 결 과			점 검 자	
:	~ :						
:	~ :						
:	~ :						
:	~ :						

열 쇠 관 리 대 장

구 분	년 월 일 보 관 자		년 월 일 지 출 자	
	시 간	성 명	시 간	성 명
구 청 장 실				
부 구 청 장 실				
자 치 행 정 국 장 실				
경 제 복 지 국 장 실				
안 전 도 시 국 장 실				
기 획 홍 보 실				
감 사 평 가 실				
새 로 운 대 덕 추 진 단				
총 무 과				
교 육 공 동 체 과				
문 화 관 광 체 육 과				
회 계 정 보 과				
세 무 과				
민 원 봉 사 과				
지 적 과				
경 제 정 책 과				
에 너 지 과 학 과				
기 후 환 경 과				
복 지 정 책 과				
사 회 복 지 과				
여 성 가 족 과				
위 생 과				
도 시 계 획 과				
안 전 총 괄 과				
공 원 녹 지 과				
건 축 과				
건 설 과				
교 통 과				
도 시 재 생 사업 단				
의 회 사 무 과				
자 원 봉 사 센 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교육공동체과장·문화체육과장·회계정보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자치행정국) ----- ----- ----- ----- <u>문화관광체육과장</u> ----- ----- ----- ----- ----- ----- -----
제7조(경제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에너지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경제복지국) ----- ----- ----- ----- <u>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에너지과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u> ----- ----- ----- ----- ----- ----- ----- -----

<p>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장을 둔다.</p>	<p>제11조(하부조직) ① ----- --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p>
<p>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정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p>
<p>③ 보건행정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p>	<p>③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행정 기구를 정비하여 적극행정 및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행정의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제6조).
-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제7조).
-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급을 정함(제11조).
- 실, 과 및 동의 분장사무를 정비함(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p.7~p.1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9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20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9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본,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처분내용	연도	기본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받금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대 덕 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0000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0000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대 덕 구 행정장 관인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제조사 포함), 기각, 각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영세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업무를 대리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정대리인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제11조).
-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서식을 신설함(제12조).
- 선정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관리 명세 서식을 신설함(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9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용역 등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 또는 심의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이후 법령 해석의 차이에 따른 행정착오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및 운영, 의무,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7조까지).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현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4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제바목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당면주요시책에 대한 책임제실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에너지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기유물 및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민원사무명란 중 “문화체육과”를 각각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에너지경제과>”를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에너지과학과>”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에너지경제과>”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에너지과학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판매사업) 허가<에너지경제과>”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판매사업) 허가<에너지과학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에너지경제과>”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경제정책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후면 본 증 소지자의 임무 제2호 중 “에너지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환경순찰반설치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안업무 시행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제나목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8 ~ p.10

[별표 3] 직속기관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1

[별표 4] 사업소의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2

[별표 5] 동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5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p.13 ~ p.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등 관리 규정」 [별표] 공무원 등의 정수표

부서별	직종별	계	단순노무	기술인부	공사인부	환경관리 요원	행정실무원	청원경찰		
								소계	경비	단속 감시
총 계		213	38	14	28	89	36	8	5	3
본 청		181	30	13	28	89	13	8	5	3
기 획 홍 보 실		2	2 구청홍보자료수집 1 구청전략홍보사무 1							
총 무 과		16	11 취시인부 4 비서실 민원처리 보조 1 비서실 및 부속실운영지원 2 부무관리 시스템 운영 1 4대보험 및 상시현업업무지원 1 정사실내청소 2	1 영양사	2 정사실외청소			2	2	
문화관광체육과		3	2 체육관관리					1	1	
회 계 정 보 과		1	1 전화안내원							
세 무 과		1		1 채납징수						
민 원 봉 사 과		3	3 기록물관리 2 가족관계등록관리 1							
지 적 과		2	2 도로별주소관리 1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 1							
기 후 환 경 과		92		2 불법투기단속	1 재활용인부	89 환경관리요원				
복 지 정 책 과		5					5 통합사례관리사			
사 회 복 지 과		5	2 장애인면의시설관리 1 노인일자리관리 1				3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여 성 가 족 과		5					5 드림스타트4 특화분야교사1			
도 시 계 획 과		3						3		3
안 전 총 괄 과		1	1 민방위시설관리							
공 원 녹 지 과		13	1 민원안내 및 전사시설 관리		10 공원녹지관리			2	2	
건 축 과		4		4 광고물정비 3 위반건축물정비 1						
건 설 과		21	1 지하수검침	5 노점상단속	15 도로보수 8 하수도보수 7					
교 통 과		4	4 주차장시설유지관리 2 불법주차정차단속업무지원 2							
의 회 사 무 과		2	1 의원사무실 의전 및 사무보조	1 음향기기관리						
보 건 소		17								
보 건 행 정 과		2					2 결핵관리사업 1 예방접종등록센터 1			
건 강 정 책 과		15					15 통합건강증진사업			
복 합 문 화 센 터		10	4 도서정리				6 개관시간연장사업			
동		3								
송 촌 동		2	2 송촌문화의집관리							
신 탄 진 동		1	1 신탄문화의집관리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미 시정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문과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공고기간 : 2020. 6. 19. ~ 2020. 7. 3.(14일간)
3. 송달대상

소유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발생년도	부과금액(원)	비고
이미* 한성*	대화동 35-411	무단증축	철근콘크리트 구조	48.6	주택	2009	7,429,000	폐문부재
황미*	중리동 239-33	무단증축	경량철골구조	3.6	주택	2009	227,000	폐문부재

4. 송달내용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자진정비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요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43)로 연락 바랍니다.

아울러,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2020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한 증원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부서)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20. 6. 19. ~ 2020. 7. 1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별관 4층)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별관4층(☎042-608-5373)
3. 주요내용

사업명칭	사업시행위치	사업시행면적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	대덕구 오정동 449-3번지, 449-10번지	389.9㎡	주민합의체 (대표 : 김영기)	지상1~5층, 2개동, 다세대주택 16세대

4. 기타사항 : 관계서류는 공람기간 중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대덕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 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오정로 41번길	도시가스관 매설	오정동 344-2	160.00 63.00	아스콘	13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156.0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20.61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689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0. 6. 19. ~ 2020. 7. 3.(14일간)
4. 기타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44-2 일원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344-2 일원
사 진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공시송달(사전4-5)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이**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7**호(어진동, 푸르지오시티1차)	88라****	2020.05.22 16:52:11	오정동 753 부근	2020.05.28	2020.06.05	폐문부재
2	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14번길 60, 3**동 12**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34주****	2020.05.23 12:21:01	송촌동 444 부근	2020.05.28	2020.06.04	폐문부재
3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동 6**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40더****	2020.05.24 16:10:27	법동 440-4 부근	2020.05.28	2020.05.29	수취인불명
4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1길 11, 3동 3**호(대화동, 세원풍남아파트)	50서****	2020.05.27 06:51:31	대화동 37-11 부근	2020.06.01	2020.06.03	폐문부재
5	김**	대전광역시 중구 목종로54번길 10, 6동 3**호(중촌동, 주공아파트)	88로****	2020.05.28 07:42:03	오정동 705-40 부근	2020.06.01	2020.06.04	폐문부재
6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동 29**호(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86고****	2020.05.28 07:32:24	오정동 45-8 부근	2020.06.01	2020.06.03	폐문부재
7	오**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2*-*	97러****	2020.05.28 16:18:31	오정동 705-7 부근	2020.06.01	2020.06.03	폐문부재

6월 공시송달(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114번길 60, 3**동 3**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39더****	2020.04.16 06:13:59	상서동 828-3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2	김**	대전광역시 중구 대운산로386번길 70-13,*2동 4**호(산성동, 그린힐빌리지)	51호****	2020.03.29 05:47:49	송촌동 444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3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60, 1**동 7**호(법동, 삼익소텔아파트)	27마****	2020.04.01 23:26:27	송촌동 444 부근	2020.06.05	2020.06.08	이사불명
4	이**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8번길 29, 2**호(월평동, 청호빌라)	04무****	2020.04.05 17:24:34	덕암동 340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5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77, 1**동 7**호(대화동, 두레아파트)	15도****	2020.04.06 16:49:26	대화동 31-36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6	조**	세종특별자치시 마은로 151, 9**동 10**호(고은동, 가락마을9단지)	22가****	2020.04.11 17:55:42	송촌동463부근 대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7	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전로6*번길 6*(파장동)	27버****	2020.04.13 14:22:09	석봉동 770 부근	2020.06.05	2020.06.10	폐문부재
8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53, 2**호(목상동)	92노****	2020.04.13 16:36:20	석봉동 770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9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53, 2**호(목상동)	92노****	2020.04.17 12:59:17	석봉동 781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10	곽**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41번길 78, 2**호(괴정동)	16소****	2020.04.17 11:42:23	송촌동 461-1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11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40번길 17, 2**호(봉산동)	47러****	2020-04-17 17:01:41	신탄진동 143-12 부 근	2020.06.05	2020.06.08	이사불명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2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72번길 30, 2**호(신탄진동, 부자빌라)	29수****	2020.04.18 10:50:40	석봉동 770 부근	2020.06.05	2020.06.08	수취인불명
13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달4길 56, 3**호(관평동)	12오****	2020.04.20 16:58:18	신일동 1689-1 부근	2020.06.05	2020.06.10	폐문부재
14	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1번길 *-**(내동)	28두****	2020.04.22 13:43:45	법동 371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15	이**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삼성동)	94서****	2020.04.23 17:18:30	법동 188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16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53, 2**호(목상동)	92노****	2020.04.26 13:16:19	석봉동 781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17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로 57-11, *동 1**호(용계동, 낙원빌라)	52저****	2020.04.26 11:44:26	읍내동 11-1 부근(계족산공영주차 장)	2020.06.05	2020.06.10	폐문부재
18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70번길 55, 1**동 9**호(목상동, 다사랑아파트)	69다****	2020.04.28 05:37:46	석봉동 770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19	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7*번길 5*(오정동)	90수****	2020.03.08 17:35:37	오정동 44-1 부근	2020.06.05	2020.06.08	수취인불명
20	이**	경기도 오산시 권리사로29번길 38, 4**호(결동, 조은빌)	55다****	2020.03.08 23:10:10	석봉동 770 부근	2020.06.05	2020.06.10	폐문부재
21	이**	대전광역시대덕구 대덕대로 1555, 1**동 2**호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106호*** *	2020.02.29 20:20:15	석봉동 770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22	백**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37, 1**동 21**호(목동, 목양마을아파트)	05소****	2020.03.11 15:46:10	오정동 705-76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23	주식회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운산로 2***(사정동)	10소****	2020.03.13 07:18:20	송촌동 494-1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24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53, 2**호(목상동)	92노****	2020.03.16 10:56:41	석봉동 770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25	송**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90번길 22, 2**호(오정동)	04어****	2020.03.22 13:43:07	오정동 753 부근	2020.06.05	2020.06.08	수취인불명
26	최**	경상북도 구미시 상림로 81-7, 3**호(사곡동, 파란채)	46가****	2020.02.01 18:55:42	중리동 462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27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 1**동 12**호(법동, 보람아파트)	11러****	2020.02.11 18:20:57	송촌동 459-4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28	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50번길 5, 12**호(선화동)	181부*** *	2020.02.12 07:55:29	중리동 232-18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29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5*, 2**호(목상동)	92노****	2020.02.15 20:16:28	석봉동 770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30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2, 4동 6**호(법동, 삼호아파트)	02노****	2020.02.18 16:12:17	법동 283-1 부근	2020.06.05	2020.06.09	폐문부재

- 17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691호

의료급여 상해요인 구상금(2019년 11차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자신의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제3자의 가해행위로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동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의거 해당 수급비(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등기우편으로 부당이득금(상해요인구상금)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라는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2019년 11차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공시송달
2. 의료급여법 제15조,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7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2020. 6. 19. ~ 7. 3.(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고
박○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3, 206호 (갈마동, 시티밸리스)	폐문 부재	7,176,320원	의료급여 상해요인 구상금(2019년 11차수)

5. 공시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를 요청하오니 2020. 7. 3. (금)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654-099192-17105 (대덕구청 의료기금(특)수입금출납원)
- 6. 문의사항 : 대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담당 ☎ 042-608-6383)